

예고된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 평가점수에 대한 내용이 탁상행정상에서 결정되어진 결과로 받아들여져 향후에도 많은 민원과 이의제기가 이어져 담당자 및 처리결정자에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책임이 따를것이라 사료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자격으로 타법에 따른 전문자격과 비교대상이지 기술자격에따른 동급평가는 어디서 도출되어 반영된 결과인지 의구심이 따릅니다. 최소한의 관심을 가졌다면 지도사협회의 의견을 구하고 반영이되었으면 좋지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행처리되는 문화재청의 전문자격은 문화재보수 기능사와 기술자로 나뉘어져 그 단계의 최고 전문자격이 문화재보수기술자로 인정받아 활동할수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지도사란 전문자격의 위치가 인력기준상에서 특급으로 최상위에 위치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로 적용되어 관리되어지고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평가예고가 잘못되고 무지에서 나온 반영결과라 판단되며, 반드시 재검토에 따른 수정되어야할 내용임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전분야 기술자격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전문자격 지도사를 취득후 현업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명을 갖는 전문가로써 가장 보람되고 자랑거리가 산업안전지도사라는 전문자격임에 동의하는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